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4

대 전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10294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에스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 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4. 21.
판 결 선 고	2016. 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4,072,300원, 지방교육세 6,941,630원, 농어촌특별세 3,703,610원 합계 84,717,5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4

가. 원고는 2010. 6.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0. 6. 24. 대전 서구 탄방동 707 나비가아르누보팰리스 지1층 B102호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이 포함된 유동화자산을 약 1,513억 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 직접 참가하여 2011. 8. 16.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1. 10. 20.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0.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하고, 같은 날 개정된 법률을 '신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6. 10.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74,072,300원, 지방교육세 6,941,630원, 농특세 3,703,610원 합계 84,717,5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을 "탄방동 707번지 나비가아르누보팰리스 지1층 비102호외 6/추징(50% 감면분)"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위 기재만으로는 과세대상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7채의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4

과하면서도 각 부동산별로 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각 부동산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알 수 없는 점, 취득세의 과세표준만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세목의 과세표준 및 각 세목의 세율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본세와 가산세를 구분하여 특정할 수 없고 가산세의 종류, 세액, 산출근거를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 제5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세액 및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들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납세고지의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알고 있다거나 사실상 이를 알고서 쟁송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54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과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산출방법 등 세액 산출의 구체적 과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당해 부과처분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과세표준액과 세율에 관한 근거 법령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근거 법령이 다소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이 요구하는 세액 산출근거의 기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55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이 '탄방동 707번지 나비가 아르누보팰리스 지1층 비102호외 6'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세액과 취득세의 과세표준,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납부기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해지는 조치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취득세 등의 산출근거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0. 2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스스로 2011. 11. 2. 취득세를 신고하여 자진납부하였고, 신고 당시 제출한 취득세자진납부신고서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 및 세액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4

을 산출하여 신고한 사실, 원고의 취득세 신고와 동시에 피고는 납세고지서를 발행하였고 당시 피고가 함께 발행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뒷면에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에 대한 세액산출근거와 세율 등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15. 6. 10. 납세고지서를 발행하면서 <세액 산출내역서>를 원고에게 함께 제공하였고(을 제5호증), 위 산출내역에서 피고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의 각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및 본세와 가산세를 구별하여 기재하고, 가산세의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표시하여 세액산출근거를 안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할 당시 세액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공하여 각 세목별 과세표준액과 세율 등 세액 산출근거를 상세히 기재하여 안내하였고, 위 산출내역서는 납세고지서와 함께 제공되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루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납세고지서상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 또는 적법절차 위반의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원고는 2011. 10. 이 사건 부동산을 일괄경매절차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위 취득 당시 원고는 총 7개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하고(각각의 부동산별로 매각대금을 구분해서 납부하지 아니함), 취득신고 당시에도 '탄방동 707번지 나비가 아르누보팰리스 지1층 비102호외 6'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일괄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 자진신고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정 및 취득세 등 신고, 납부 경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일체로서 하나의 과세단위로 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7개의 각 부동산별로 구분하여 부동산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세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4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준보

판사 조형목

판사 김선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4

별지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 및 제28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나.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다.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 및 제2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2.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55조(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4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납세의 고지) 법 제55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1.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세액·납부기한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 다만, 하나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둘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가 세액 산출근거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끝>